

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밸류고배당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일괄신고서	-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4년 1월 16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생략>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 1월 1일 이후)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좌동>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 1월 1일 이후)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

	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3. <신설>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좌동> 3. <u>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</u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5. <생략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5. <좌동>

◆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	<u><삭제></u>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</u>
간이투자설명서 [요약정보]- 투자비용/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		<u><생략></u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		<u><생략></u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u><신설></u>	<u>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</u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<u><신설></u>	<u>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</u>
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<u>7.29%</u>) <후략>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<u>5.25%</u>) <좌동>
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*별첨 1(정정 전)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*별첨 1(정정 후)
제3부 1. 재무정보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		가. 요약재무정보 <u><신설></u>	가. 요약재무정보 <u>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</u> <u>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u> <u>- 주식의 매매회전을</u>
제3부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	<u><신설></u>	<u>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현황 기재</u>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 업무 (1) 주요 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생략> <u><신설></u>	<좌동> <u>-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
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
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	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yfund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(www.syfund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
<p>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	<p>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</p>	<p><지분증권거래> 2) 선정방법 -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분기 평가 가능한 <후략></p>	<p><지분증권거래> 2) 선정방법 -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 가능한 <좌동></p>

● 별첨 1

- 정정 전
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<p>납입요건</p>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
<p>연금 수령요건</p>	<p>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
<p>세액공제</p>	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</p> <p>- 연소득 5,5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이하 : 16.5% (66만원 세액공제)</p> <p>- 연소득 5,500만원 초과 ~ 1억 2,0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초과 ~ 1억 이하</p>

		: 13.2% (52만 8천원 세액공제) - 연소득 1억 2,000만원 초과 /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: 13.2% (300만원 적용, 39만 6천원 세액공제) ※ 단,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
과세	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%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- 만 55세~69세 : 5.5% / 만 70세~79세 : 4.4% / 만 80세 이상 : 3.3% ※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 적용
	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(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)	아래 경우 해당하는 연금소득(공적연금소득 제외)으로 분리과세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부득이한 사유(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(기본공제대상에 한함)의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-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
	연금외 수령시 과세 (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)	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※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	해지가산세	없음
	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(주1)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함.

- 정정 후
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①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
	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
연금 수령조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
세액공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합소득과세표준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액)</th> <th>세액공제 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,500만원 이하 (5,500만원 이하)</td> <td>600만원</td> <td>16.5%</td> </tr> <tr> <td>4,500만원 초과 (5,500만원 초과)</td> <td>(900만원)</td> <td>13.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단,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%(300만원 한도)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</p> <p>-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함</p> <p>-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</p>	종합소득과세표준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액)	세액공제 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,500만원 이하 (5,500만원 이하)	600만원	16.5%	4,500만원 초과 (5,500만원 초과)	(900만원)	13.2%
종합소득과세표준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급여액)	세액공제 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	
4,500만원 이하 (5,500만원 이하)	600만원	16.5%								
4,500만원 초과 (5,500만원 초과)	(900만원)	13.2%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% ~ 3.3%(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 적용									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(단, '23.1.1.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									
연금외 수령시 과세	기타소득 분리과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
해지 가산세	없음									
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(연금외수령)	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(기본공제대상에 한함)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.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

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	연금소득 분리과세 5.5%~3.3%(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